

제21조(물류시설 · 장비의 확충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>

제22조(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(이하 "물류관련기관"이라 한다)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
2.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· 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

제23조(물류 공동화 · 자동화 촉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25. 10. 1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25. 10. 1.>

③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8. 14., 2023. 4. 18., 2025. 10. 1.>

1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(이하 "클라우드컴퓨팅"이라 한다)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[이하 "정온(定溫)물류"라 한다]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
 - 가. 「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 ·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
 - 나.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
 - 다.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

④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8. 8. 14., 2025. 10. 1.>

⑤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8. 14., 2025. 10. 1.>

⑥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8. 14., 2025. 10. 1.>

⑦ 시 ·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고,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8. 6., 2018. 8. 14., 2025. 10. 1.>

제2절 물류표준화